**근로자 파견계약서**

[ ](이하 "갑"이라 한다) 와 [ ](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이 파견한 근로자를 “갑”의 사업장에서 “갑”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도록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있어 사용사업주인 “갑”과 파견사업주인 “을” 사이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파견근로자의 수)**

1. 이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이 종사할 업무내용 및 각 업무별 파견근로자의 수는 다음과 같다. (표첨부)

2. “을”은 전항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수를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4조 (파견근로자의 근로 장소)**

1. 사업장명칭 :

2. 소 재 지 :

3. 근 로 장 소:

**제5조(근로자 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개시일)**

1. 파견기간(계약기간) :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2. 파견근로 개시일 : 200 년 월 일

**제6조(근로시간)**

1. 1일 근로시간 : 8시간 기준

2. 시업, 종업 시각 : 09:00 / 18:00

3. 휴게시간 : 12:00 – 13:00

4. 근로시간의 구체적인 운용에 있어서는 “갑”을 법률상 사용자로 본다.

**제7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

1. "을"은 "갑"의 조업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장근로 등으로 인한 가산임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을"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본다.

**제8조 (휴일, 휴가 등)**

파견근로자의 휴일, 휴가에 관하여는 “갑”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9조(편의제공)**

1. 파견근로자는 “갑”의 식당을 이용하되 식대는 “을”이 지불한다. 1식당 식대는 “갑”이 “갑”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과 동일하다.

2. “갑”의 지시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식대는 “갑”이 부담한다.

3. 파견근로자는 다음의 후생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 휴게실, 사무실, 화장실

2) 전기, 수도

3)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의 합의하에 무상대여 및 이용토록 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 “을”은 인사부 OOO 대리(예시)를 파견사업관리책임자로 임명한다.

2.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파견근로자에게 취업조건 및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며, “갑”에게 파견근로자의 성명, 성별, 연력, 학력, 자격 기타 직업능력을 통지하여야 한다.

3. “갑”은 사용사업관리책임자로 인사부 OOO 대리(예시)를 선임한다.

4. 사용사업관리책임자는 파견근로자를 지휘, 명령하는 자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담당하고 파견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한다. “갑”은 파견근로자로부터 파견근로에 대한 고충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고충의 내용을 “을”에게 통지하고 신속,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5. “갑”은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 명령할 자로 OOO 대리(예시)를 임명한다.

**제11조 (대금의 지급)**

1. 금액 : 금 OOOOO 원/월(부가세별도)

2. “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매익월 3일까지 청구하며 “갑”은 그 청구일로부터 O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3. “갑”의 휴업 등의 사유로 파견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을 경우 제1항 소정의 월정액/30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일에 대한 파견대가로 산정하여 일할 계산한다.

**제12조 (안전과 보건)**

1.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갑”이 본 계약에 따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때부터는 원칙적으로 “갑”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용자로 본다.

2. “을”은 파견근로자의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단체상해보험(보장성 소멸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이 제시하는 안전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갑”이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당사자의 의무)**

1.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파견사업주 관리에 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을”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갑”의 작업지시 및 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4. 파견기간 중 “을”은 파견근로자의 신원 일체를 책임지며 파견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 기타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한다.

5. “을”은 “갑”이 제공한 장비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장비가 손상, 파손된 경우에는 “을”이 손해를 배상한다.

6. “을”은 직원채용, 처우 등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고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7. 본 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을”은 파견근로자의 급여, 상여, 제수당, 복리후생비, 퇴직금, 당해연도 연차 발생분 및 잔여 연차 등을 정산하여야 하며 “갑”이 새로운 업체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업체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철저히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8. “갑”은 “을”에게 작업장소와 장비를 제공하며 작업에 소요되는 장비의 운영관리 및 수리비를 부담한다.

9. “갑”은 “을”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제14조 (대금의 관리)**

1. “을”은 본 계약에 기한 파견대가를 별도의 통장에 입금, 관리하고 각 지출항목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고 사실대로 기장 관리하여야 한다.

2. “을”은 파견대가를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할 수 없으며 명의 임대, 보증 등 갑의 파견사업주 관리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을”은 파견근로자들의 갑에 대한 귀속감 증대, 작업능률 향상 극대화를 위해 파견대가의 75%이상을 임금성 부분으로 처우한다.

4. “을”은 파견업무에 관한 제반서류 및 회계장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갑”의 요청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5. “을”은 매월 파견대가 청구시 임금대장, 상여대장, 퇴직충당금통장사본, 관리경비 지출내역 등 제반사항에 대한 영수증이 첨부된 전월의 월차 손익계산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당사자 일방이 파산, 합병, 회생절차 개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건의 계약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할 때

2. 파견근로자의 작업거부에 의한 생산차질이 발생하였거나 노사문제로 인해 “갑”의 기물이 파손된 때

3. “을” 노사문제로 인해 “갑”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발생한 때

4. “을”의 노사관리 부실로 인해 노사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5.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갑”이 제시한 기준 이하로 처우하는 등 “을”이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6. 환경관리 및 안전관리 부실로 인해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여 “갑”에게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7. 당사자 일방에게 재해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이행이 어려울 때

8.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본 계약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6조 (손해배상)**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 (관할 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의 관할은 갑의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8조(기타 사항)**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내규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기명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00년 월 일.

甲 : 회사명

주소

대표이사

乙 : 회사명

주소

대표이사